#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평창군의회 보고(안)

의안 번호 222

제출년월일 : 2015. 5. 10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O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.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에 보고하고,
- O 이를 통해 시설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## □ 공간적 범위

○ 평창군 전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14개소(1,058,044m²)

			집행	미집행 군계획시설							
구 분		합 계		소 계	10년 이상	10년 이하					
			군계획시설	<u> </u>	장기미집행	미집행					
계	개소	907	434	473	314	159					
/1	면적(m²)	37,112,511	35,767,223	1,345,288	1,058,044	287,244					
교통시설	개소	735	299	436	295	141					
(도로, 주차장 등)	면적(m²)	7,454,360	6,550,291	904,069	650,979	253,090					
공간시설	개소	61	26	35	17	18					
(공원,녹지 등)	면적(m²)	1,634,887	1,220,537	414,350	380,196	34,154					
유통및공급시설	개소	22	22	_	-	-					
(수도공급설비)	면적(m²)	173,040	173,040	_	-	-					
공공문화체육시설	개소	58	57	1	1	-					
(공공청사, 학교 등)	면적(m²)	4,313,110	4,286,739	26,371	26,371	-					
보건위생	개소	1	1	_	-	_					
(공동묘지)	면적(m²)	178,400	178,400	-	-	-					
환경기초시설	개소	13	12	1	1	-					
(오수처리장 등)	면적(m²)	47,789	47,291	498	498	_					
방재시설	개소	17	17	_	-	-					
(하천)	면적(m²)	23,310,925	23,310,925	_	-	-					

<sup>※</sup>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면적산정

## ○ 장기미집행(10년이상)시설 평가 기준

-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, 연구보고서,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평가인자 적용

O 서스이펀 기이기	계량적	덕기준	적 용 여 건						
우선순위평가인자	등급	점수	식용어건						
1. 시설부지 여건	A	12	•보상비1㎡당 7만원이하						
	B	8	•보상비1㎡당 7만원이상						
	C	4	•보상비1㎡당 20만원이상						
2. 시설개설에 따른 수혜도 (개발효과)	A	12	•상업지역						
	B	8	•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						
	C	4	•자연녹지지역						
3. 주변시설 연계성	A	12	•주변지역 기개발완료						
	B	8	•주변지역 일부 개발						
	C	4	•주변지역 미개발, 민원부재						
4. 공사난이도	A	12	•경사도 5도 미만						
	B	8	•경사도 5이상~10도미만						
	C	4	•경사도 10도 이상						
5. 우선사업	A	12	•관련부서 사업실시예정, 우선사업 대상						
	B	8	•중장기 사업계획						
	C	4	•관련부서 사업계획 없음						
6. 미집행기간	A	12	•15년미만						
	B	8	•15년이상~30년미만						
	C	4	•30년이상						
7. 토지소유자 비율	A	12	●사유지가 30%미만						
	B	8	●사유지가 30%이상~80%미만						
	C	4	●사유지가 80%이상						
8.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	A B C	12 8 4	•일부집행 비율 50%이상 또는 폭원미달 도로중개설율50%이상 •일부집행 비율 50%미만 또는 폭원미달 도로중개설율50%미만 •전체 미집행						
※ 민원발생여부	기중치	+1~+4	•민원없음: +4점, •개별(1인)민원: +3점, •2인이상 연계민원: +2점, •10인이상 집단민원: +1점						
	합계	100점	(8개 항목 X 12점 + 가중치 4점)						

※ 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집행계획단계설정

(75점이상=1단계 / 74점~60점=2-1단계 / 59점 이하=2-2단계)

: 점수가 높을수록 경우 사업 우선집행 대상임

# O 단계별집행계획

(면적단위 : m²)

			합기	례		<u>n</u>	공간시	설 (공원	75	·공문화치 (체육시		!	환경기초시설 (오수처리장등)								
도	시지역	계	1단계	2-1단계	2-2 단계	계	1단계	2-1단계	2-2 단계	계	1 단계	2-1단계	2-2 단계	계	1단계	2-1 단계	2-2 단계	계	1 단계	2-1 단계	2-2 단계
	개소	473	36	263	174	436	35	244	157	35	-	19	16	1	1	_	_	1	-	_	1
합계	면적(m²)	1,345,288	196,766	896,493	252,029	904,069	170,395	512,448	221,226	414,350	· —	384,045	30,305	26,371	26,371	_	_	498	_	_	498
평창	개소	27	4	12	11	25	4	10	11	2	ı	2	_	_	_	_	_	_	-	_	_
도시 지역	면적(m²)	45,341	18,685	18,038	8,618	42,912	18,685	15,609	8,618	2,429	-	2,429	_	_	-	_	-	-	-	_	_
대화	개소	38	4	18	16	35	4	15	16	3	-	3	_	_	-	_	_	_	_	_	_
도시 지역	면적(m²)	118,123	3,464	76,700	37,959	113,623	3,464	72,200	37,959	4,500	-	4,500	-	-	-	-	-	-	-	_	_
봉평	개소	29	4	24	1	26	4	21	1	3	_	3	_	_	-	_	-	-	_	_	
도시 지역	면적(m²)	260,517	23,291	236,098	1,128	58,560	23,291	34,141	1,128	201,957	_	201,957	-	_	-	_	-	-	-	_	-
진부	개소	130	6	86	38	123	5	83	35	6	-	3	3	1	1	_	-	-	_	_	
도시 지역	면적(m²)	319,207	96,904	180,203	42,100	284,770	70,533	174,203	40,034	8,066	-	6,000	2,066	26,371	26,371	-	-	_	-	_	-
황계	개소	86	4	68	14	80	4	63	13	6	-	5	1	_	-	_	_	_	-	_	_
도시 지역	면적(m²)	378,547	35,576	324,723	18,248	210,322	35,576	158,498	16,248	168,225	_	166,225	2,000	_	-	_	-	-	-	_	-
재산	개소	16	-	-	16	15	-	-	15	1	_	-	1	-	-	_	-	-	_	_	-
도시 지역	면적(m²)	29,947	-	_	29,947	25,577	-	-	25,577	4,370	_	_	4,370	_	-	_	-	-	-	_	-
비도시 지역	개소	147	14	55	78	132	14	52	66	14	ı	3	11	_	_	_	_	1	ı	_	1
(지구 단위)	면적(m²)	193,606	18,846	60,731	114,029	168,305	18,846	57,797	91,662	24,803	_	2,934	21,869	_	_	_	-	498	_	_	498

## ○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

(면적단위 : m²)

	1-141			합계 교통시설(도로,주차장)					수차장)		공간시설(공원,녹지,공공공지)						공공문화체육시설(체육시설등)						환경기초시설(오수처리장등)					
도 ^	시지역	계	우선 해제	1단계	2-1단 계	2-2단 계	계	우선 해제	1단계	2-1단 계	2-2단 계	계	우선 해제	1단 계	2-1단 계	2-2단 계	계	우선 해제	1단계	2-1 단계	2-2 단계	계	우선 해제	1단 계	2-1 단계			
<del>-</del>	개소	314	43	33	187	51	295	39	32	175	49	17	3	-	12	2	1	-	1	-	-	1	1	-	ı	-		
합계 	면적(m')	1,058,044	46,989	181,258	743,295	86,502	650,979	44,298	154,887	370,127	81,667	380,196	2,193	-	373,168	4,835	26,371	_	26,371	-	-	498	498	-	-	-		
평창	개소	17	1	2	4	10	17	1	2	4	10	-	-	-	-	-	-	-	-	-	-	-	-	_	_	-		
도시 지역	면적(m²)	17,658	103	4,425	4,615	8,515	17,658	103	4,425	4,615	8,515	-	_	-	-	_	_	-	-	-	-	-	-	-	_	-		
대화	개소	36	6	4	16	10	33	6	4	13	10	3	_	-	3	-	_	-	_	-	-	-	-	-	-	_		
도시 지역	면적(m²)	116,517	15,488	3,464	75,094	22,471	112,017	15,488	3,464	70,594	22,471	4,500	-	-	4,500	-	-	-	-	-		_	-	-	-	-		
봉평	개소	26	-	4	21	1.	23	-	4	18	1	3	_	-	3	-	-	-	_	-	-	-	-	-	-	-		
도시 지역	면적(m²)	256,525	-	23,291	232,106	1,128	54,568	-	23,291	30,149	1,128	201,957	-	-	201,957	-	-	-	-	-	_	-	-	_	_	-		
진부	개소	81	5	6	75	-	77	5	5	72	-	3	-	-	3	-	1	-	1	-	-	-	-	_	_	-		
도시 지역	면적(m²)	237,394	7,770	96,904	140,490	-	205,023	7,770	70,533	134,490	-	6,000	_	-	6,000	-	26,371	-	26,371	-	-	-	-	-	_	_		
황계	개소	29	-	4	21	4	26	-	4	19	3	3	-	-	2	1	-	-	_	-		_	-	Ī	-	_		
도시 지역	면적(m²)	275,620	-	35,576	232,884	7,160	113,938	_	35,576	73,202	5,160	161,682	_	-	159,682	2,000	-	-	-	-		_	-	-	-	-		
비도 시지	개소	125	31	13	50	31	119	27	13	49	30	5	3	-	1	1	_	_	_	-	-	1	1	-	_	-		
역 (지구 단위)	면적(m²)	154,330	23,628	17,598	58,106	54,998	147,775	20,937	17,598	57,077	52,163	6,057	2,193	-	1,029	2,835	-	-	_	-	-	498	498	-	-	_		

※ 1단계 : 2016~2018년 / 2-1단계 : 2019~2020년 / 2-2단계 2020년 이후 2-2단계 향후 폐지검토

## ○ 수행절차



# 3. 단계별집행계획

- O 평창군의회 보고 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
- O 총보상비, 계획상 중요도, 관련부서 우선사업, 민원 등을 종합적 검토 후 투자우선순위 설정
- 집행계획단계 구분

구 분	집행계획	근 거
1단계	2016~2018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75점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주민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
2-1단계	2019~2020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74점~60점으로 군계획시설 개설 여건이 양호하여 중기적 개설계획수립에 적합한 시설
2-2단계	2020년 이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59점 이하로 계획상 필요한 노선이나 주변여건상 장기적 개설계획수립이 적합한 시설
우선해제	폐지검토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59점 이하 시설 중 계획상 불합리하게 지정되어, 실제개설이 불가하거나, 향후 개설 가능성이 전무한 노선 으로 폐지 검토

### ■ 관계법령 발췌

##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48조 (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)

- -실효일 :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(2020년 7월 2일 이후)
- -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: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에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
- -지방의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함 (1년 이내)
- ※ 2012년 4월 15일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
- 법 부칙 제16조 (군계획시설 실효 가산일 산정)
- -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⇒ 2000년 7월 1일
- -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⇒ 당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결정일

시행령 제42조 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

-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등을 말한다)
-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 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-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

제1절 일반원칙

4-9-1-2. 기본적인 고려사항

- (1)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"대"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.
- (2) 도시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.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,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
- (3)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·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, 주민·전문가·도시계획사업시행자·관계기관·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.
- (4)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,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(5)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 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
- (6)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 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.
- (7)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.
- (8)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,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.
- (9)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 시설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 제를 검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.

#### 4-9-1-3. 일반적인 재검토기준

- (1) 기술적 가능성 :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,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
- (2) 재원조달 가능성 :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·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, 실현가능한 재원조 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
- (3)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: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
- (4) 시설입지의 적정성 : 시설의 위치, 폭원, 규모,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
- (5) 장래 계획의 유동성 :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 한국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
- (6)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: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 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
- (7) 적법성 :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
- (8)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: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·재개발구역·주 거환경개선지구·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
- (9) 자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: 해당 시·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

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

4-9-2-1. 도로

- (1)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(일부구간 포함)
- ①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: 폐지 검토
- ③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: 폐지 검토
- ④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: 폐지 검토
- ⑤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(지나친 경관훼손, 과도한 터널계획, 지장물 과다분포 등): 폐지 검토
- ⑥ 시·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경우(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) : 존치 검토
- ①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: 매수 또는 건축허용
- (2) 일부미개설 도로(폭원)
- ① 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③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④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·소통이 가능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⑤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(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): 존치 검토
- ⑥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: 존치 검토

- (3)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: 조기 보상
- (4)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
  - ①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(하천복개도로등)가 개설된 경우: 폐지 검토
  - ②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경우 : 폐지 검토
  - ③ 거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된 경우 : 노선축소 검토
  - ④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
#### 4-9-2-2. 공원

- (1) 공원기능 상실
  - ①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: 폐지 검토
  - ②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: 축소 검토
- (2)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
  - ①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: 축소 검토
  - ②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: 건축 허용
  - (3)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
  - ①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(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,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): 조정 검토
  - ②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 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: 보전녹 지지정 등 대체관리